

[] 휴업

청소년복지시설

[] 폐업

[] 운영재개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신고인	운영법인 (운영자)			성명	
	소재지 (주 소)			전화번호	
시설현황	시설명 (시설의 종류)			시설장 성명	
	주 소				
	휴업기간			휴업일,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	
시설거주자 조치계획		퇴소 (귀가) 명, (전원) 명, (취업) 명		위탁 명	기타 명
재산활용 계획					
휴업 또는 폐업 사유					
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확인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첨부서류

1. 시설의 휴업(폐업, 재개) 사유서[법인인 경우에는 휴업(폐업, 재개)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] 1부
2.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(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) 1부
3.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(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